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8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남인순 · 서영석 · 이수진
김 윤 · 김남희 · 박지원
김남근 · 백혜련 · 백선희
오세희 · 전종덕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 임(안 제15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u> 9. <u>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 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u> ⑦ (현행과 같음)